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2가단2736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6.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2020. 9. 2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21,428,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428,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안홍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21,428,0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B의 자녀입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갑 제4호증 제적등본).

나. 과세경위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은 B이 201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3. 11. 30.을 납부기한으로 13,495,55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까지 B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1,428,050으로 구체적인 체납내역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참고).

<표 1> 소제기일 현재 B 국세체납액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부가가치세	2013.1기	2013. 6. 30	2013. 11. 30.	13,495,550	21,428,050

다. 소외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의 무상양도

- 1) 소외 B, (주)C, (주)D, B의 자 A은 2020. 9. 22. 전라남도 영암군 E 공사와 관련하여 B이 B의 책임으로 관련 공사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공사일체를 완료 후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 (주)C에 제출하면,
- 2) (주)D는 소외 B의 요청에 따라 이 공사와 관련한 공사미지급금 164,200,000원에 갈음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F 제5층 G호 부동산을 소외 B의 자 A을 매수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서류일체를 교부한다는 내용으로 상호간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확인서와 정산서 및 분양현황표에 각각 서명날인 후교부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확인서, 갑 제6호증 정산서, 갑 제7호증 H건물 분양현황표(G호)).
-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9. 25. (주)D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F 제5층 G호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제 197493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한 분양금액 정산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습니다(갑 제8호증 분양계약서, 갑 제9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 2> 분양금액 정산내역

(단위 :원)

분양물건	분양금액	공사미수금 대물상환금액	임대보증금	대출금액	차액
광주광역시 광산구 F 제5층 G호	396,313,422	164,200,000	15,000,000	215,800,000	1,313,422

- 4) 소외 B은 2020. 9. 22. 전라남도 영암군 E 공사와 관련 공사의 미수금 164,200,000원에 갈음하여 피고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F 제5층 G호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하여 분양금액 396,313,422원 중 공사미수금 164,200,000원을 대물변제를 통하여 정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9. 25. (주)D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분양금액 정산일인 2020. 9. 22. 공사미수금 164,200,000원을 피고에게 무상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6호증 정산서, 갑 제7호증 H건물 분양현황표(G호)).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B이 2020.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여 당시 이미 고지된 201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21,428,050원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무상양도

- 1) 전술한 바와 같이 B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무상양도로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 2) 이 사건 채권 무상양도 시점인 2020. 9. 25.의 B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고, 위 채권의 무상양도로 인하여 B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가 됨이 분명합니다.

<표 3> 2020. 9. 25. 당시 B의 재산상태

(단위 : 원)

구 분		내 역	평가액(원)	입증자료 (갑호증)
적극재산	미수채권	공사미수금	164,200,000	갑 제5호 증
	보험금	우채국(계좌번호 1 생략)	6,094,000	갑 제10호
		우채국(계좌번호 2 생략)	10,111,000	증
	예금채권	I조합(계좌번호 3 생략)	3,604	갑 제11호
		I조합(계좌번호 4 생략)	1,809	증
		기업은행(계좌번호 5 생략)	64,672	갑 제12호 증
		J은행(계좌번호 6 생략)	38,202	갑 제13호 증
	소계(①)		180,513,287	
소극재산	조세채무	부가가치세	21,428,050	갑 제1호 증
	소계(②)		21,428,050	
순자산(③)		적극재산(①) - 소극재산(②)	159,085,237	
사해행위(④)		적극재산(공사미수금) 감소분	164,200,000	
채무초과		순자산(③)-사해행위(④)	△5,114,763	

나. 사해의사

-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 2) 소외 B은 국세를 채납한 상태에서 공사미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2020. 9. 25. 이 사건 채권인 공사미수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외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가.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소외 B은 이 사건 채권인 공사미수금을 피고에게 무상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피고는 B의 자녀로서 B에게 부가가치세 국세채납의 존재,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

지리라는 점 및 B의 사해의사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 B의 국세채납정리를 위하여 2022. 5. 3. 광산세무서에 피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자료인 확인서 및 정산서 등 확인을 통하여 B로부터 피고 A에게 이 사건 채권인 공사미수금이 무상양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확인서, 갑 제6호증 정산서 참조). 이에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라는 사해행위 소송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6. 결 론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 무상양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피보전채권액(채납액)에 상응하는 21,428,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동액 상당의 원상회복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